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안내

국민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와 관련하여, 발급절차와 조합업무처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도취지

- 인감도장 제작 및 행정기관 신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되어 국민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개선
- 인감도장 대신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 발급절차

-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 기재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3. 업무처리

- 보증 및 용자 등 조합 영업 업무 시 개인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병행하여 사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시 행정관청에서 용도란에 사용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약정체결용” 또는 징구목적에 맞는 용도를 기재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업무 담당자는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받은 자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발급사실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 → ⑦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⑧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3) 신청 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6) 서식	○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 기타 ○ 수임인 : 미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발급기관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미날인
8) 발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 1914. 7. 7	○ 2012. 12. 1	○ 2013. 8.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사전절차

민원인	승인권자	수요기관
<p>① 민원인 본인이 승인권자(읍·면·동 등) 발급기관 직접 방문</p> <p>②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신고거소증+여권(PR) <p>공인인증서 발급 (기 발급자 해당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 방문신청 · 기존 발급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p>③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한 확인 <p>④ 이용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시스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부여 -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 주소지에 승인 관련공문 이송 	

2. 발급절차

<p>⑤ 민원24 접속 - ID, PW 입력</p> <p>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 읍·면·동 등에서 부여받은 비밀번호 입력 및 수정 - 보안토크, 휴대폰 인증, PC 등 추가 신분확인 <p>⑦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등 작성 -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p>⑧ 전자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서명하여 확인 <p>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자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p>⑩ 발급증 출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	--



3. 활용절차

		<p>⑪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민원인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발급 확인
--	--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4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1571-6083-0093-091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洪)	서명	
주민등록 번호	7		
주소	서울특별시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빈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란
	부동산 관련 의외 용도	계약용	
수입인	성명	빈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란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17	수수료	6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유의사항

1. 서명을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입인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및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의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 자동차대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 수입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실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시 :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입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본서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m²)
(수갈증지가 인명(질병)오차 있으나
정밀한 그유평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공사이행보증 안내

(1)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으로만 거래가능

공사이행보증은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와는 별도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합직원 입회하에 연대보증인이 자필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하되, 입찰유의서 등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보증인수 거부제도 시행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69%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증금액 이상의 물적담보를 제공하거나, 해당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물적담보 제공시 〉

1. 낙찰률이 69% 미만 66% 이상인 경우 : 차액의 100%
2. 낙찰률이 66% 미만 63% 이상인 경우 : 차액의 150%
3. 낙찰률이 63% 미만 60% 이상인 경우 : 차액의 200%

※ 특별심사 결과 담보를 징구하는 경우 위와 비교하여 담보금액이 큰 금액 징구

- 낙찰률이 60% 미만인 공사는 위와 관계없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3) 보증기간

계약일(변경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변경 또는 추가보증의 경우는 변경계약일을 말함)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당해 계약문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4)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는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text{수수료} = \text{보증금액} \times \frac{\text{계약일부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의 일수}}{365} \times \text{요율}$$

※ 보증수수료 할증

특별심사 등급에 따라 산출수수료의 40%까지 할증할 수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 할인

조합원 입보 시 산출수수료의 20%가 추가 할인됩니다(단, 낙찰률 69% 미만인 공사는 제외).

[보증수수료 할증]

보증별	단위	신용 평가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공사이행보증	연%	0.15	0.225	0.325	0.45	0.45	0.475	0.475	0.5	0.5

(5) 연대보증인

기존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개별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정인의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부가 연대보증하여야 합니다.

(6)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문 사본 및 공사낙찰확인(원)
-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시공이행각서(보증서에 보증이행업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 기타 보증심사에 필요한 경우

(7) 특별심사 기준

(가) 심사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신용도 (40점)	조합신용평가 결과(40점)	AAA	40
		AA	37
		A	34
		BBB	30
		BB	26
		B	22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신용도 (40점)	조합신용평가 결과(40점)	CCC	18
		CC	15
		C	12
계약내용 (50점)	예정가격대비 당해공사의 낙찰률 (35점)	77% 이상	35
		74% 이상 77% 미만	33
		71% 이상 74% 미만	31
		68% 이상 71% 미만	29
		65% 이상 68% 미만	27
		62% 이상 65% 미만	24
		60% 이상 62% 미만	21
	계약형태 (10점)	공동수급인 3인 이상	10
		공동수급인 2인	7
		단독계약 (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 식에 의한 공동도급 포함)	3
	보증채권자 유형(5점)	국가·지방자치단체	5
		출연·출자기관 등 정부산하기관	4
기타 공공기관		3	
안정성 (10점)	안정성 등급(10점)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
		4등급	7
		5등급	6
		6등급 이하	5
가·감점	지점장 평가		±5
총 계			100점

(나) 보증채권자 유형 구분

- 정부출연·출자기관 등 정부산하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공공기관 : 상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이외에 국가계약법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 또는 단체
- ※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인정

(다) 안정성 등급(10점)

안정성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하
점 수	10	9	8	7	6	5

◆ 안정성등급 산출방법

출자등급		1						2						3						4						5					
시공능력 등급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신 용 평 가 부 급	AAA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2	2	1	1	1	2	2	2	1	1	2	2	2	3
	AA	1	1	1	2	2	2	1	1	2	2	2	3	1	2	2	2	3	3	1	2	2	3	3	3	2	2	3	3	3	4
	A	1	2	2	2	3	3	2	2	3	3	3	3	2	2	3	3	3	4	2	3	3	4	4	4	2	3	4	4	4	5
	BBB	2	3	3	3	4	4	2	3	4	4	4	5	3	3	4	4	5	5	3	4	4	5	5	6	3	4	5	5	6	6
	BB	2	3	4	4	4	5	3	4	4	5	5	5	3	4	5	5	6	6	4	5	5	6	6	7	4	5	6	6	7	7
	B	3	4	4	5	5	5	3	4	5	5	6	6	4	5	5	6	6	7	4	5	6	7	7	8	5	6	7	7	8	8
	CCC	3	4	5	5	6	6	4	5	6	6	7	7	4	5	6	7	7	8	5	6	7	8	8	9	5	7	8	8	9	9
	CC	4	5	5	6	7	7	4	6	7	7	8	8	5	6	7	8	8	9	5	7	8	8	9	9	6	8	9	9	10	10
C	4	5	6	7	7	8	5	6	7	8	8	9	5	7	8	8	9	9	6	7	8	9	9	10	7	8	9	10	10	10	

주) 조합원의 안정성등급은 출자·시공능력등급의 열과 신용평가등급의 행이 교차하는 칸의 숫자로 한다.

◆ 특별심사 등급별 할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범위

심사등급	평점구간	보증수수료 할증	담보징구 범위
1~5등급	70점 이상	면제	면제
6등급	65점 이상 70점 미만	산출수수료의 10%	보증금액의 2%
7등급	60점 이상 65점 미만	산출수수료의 20%	보증금액의 6%
8등급	55점 이상 60점 미만	산출수수료의 30%	보증금액의 10%
9등급	55점 미만	산출수수료의 40%	보증금액의 14%

※ 담보제공 대신 조합원 입보로 대체 가능(수수료 할증기준은 동일)

(1) 출자등급

등급	출자좌수 구간값
1	1,000좌 이상
2	500좌 이상 1,000좌 미만
3	300좌 이상 500좌 미만
4	100좌 이상 300좌 미만
5	100좌 미만

(2) 시공능력등급


등급	시공능력 구간 값
1	500억 이상
2	100억 이상 500억 미만
3	50억 이상 100억 미만
4	30억 이상 50억 미만

등급	시공능력 구간 값
5	10억 이상 30억 미만
6	10억 미만

주) “시공능력”은 관련 법령에 의한 시공능력 공시금액 (공시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말한다)으로서 당해 공사의 업종별 시공능력금액으로 한다.

(3) 신용평가등급 : 조합원별로 부여받은 조합의 신용등급

(라) 가·감점(±5점) : 지점장 평가

- 과도한 시공능력평가금액 이상의 공사 등에 따른 조합채권 침해의 우려 유무 : ±2점
- 관리능력과 동업계 세평 및 사업전망 : ±3점 

인증서갱신 이용안내

가. 인증서갱신이란?

설비조합 온라인지점을 이용하기 위해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던 인증서가 만료되어 재발급 받은 경우 또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인증서를 설비조합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갱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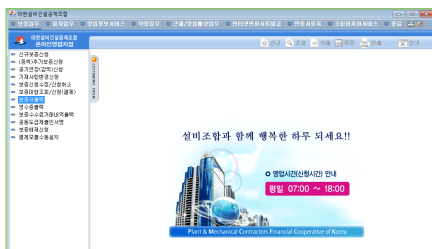
설비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증서갱신을 클릭하거나 온라인지점에서 타기관인증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인증서 갱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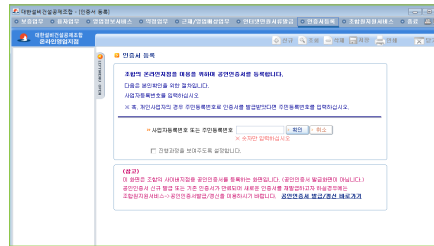
①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갱신”을 클릭



② 온라인지점에서 “인증서등록”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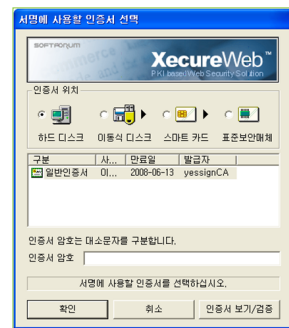


2) 타기관인증서를 등록하는 화면



3)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혹,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십시오)

4)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인증서가 나타납니다.



5) 등록할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갱신이 완료됩니다. 갱신 완료 후 온라인지점이 종료되며 온라인 지점 재접속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 여러 개의 인증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온라인지점 이용 시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